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u>산업통상자원부</u>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u>산업통상부</u>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u>산업통상자원부</u>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기관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u>산업통상부</u>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기관이 <u>산업통상부장관</u>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u>산업통상부장관</u>이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2 ~ 5. (생략) 6. “수탁기관”이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영 제74조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수탁기관”이란 <u>산업통상부장관</u>이 영 제74조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지원조건) ①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지원사업 지원범위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 4. (생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제5조(지원조건) ①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u>산업통상부장관</u>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지원사업 지원범위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u>산업통상부장관</u>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부장관</u>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현행	개정안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 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u>산업통상부장관</u>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산업통상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직전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u>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u> 등의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전 연도 3월말까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직전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u>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제13조에 따라 심의된 사업 선정 결과</u> 등의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전 연도 3월말까지 <u>산업통상부장관</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반영)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반영) <u>산업통상부장관</u> 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집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 ~ ② (생략)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부장관</u>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공고 및 선정)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u>선정</u>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공고 및 선정)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u>산업통상부장관</u>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u>선정</u>할 수 있다.
제11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으로 정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제11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으로 정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현행	개정안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u>산업통상부장관</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하여 <u>산업통상자원부</u>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기술·법률·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탁기관의 장이 보고한 국제감축사업 선정 결과 심의 2. 기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하여 <u>산업통상부</u>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기술·법률·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u>산업통상부장관</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탁기관의 장이 보고한 국제감축사업 선정 결과 심의 2. 기타 <u>산업통상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재검토 기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u>산업통상부장관</u>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